

【 8 】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11. 22.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99.1.21 법률 제5647호)되었고, 이어 동법 시행령이 개정 ('99.4.30 대통령령 제16267호)됨에 따라 동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종전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사용토록 함(안 제5조)
-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의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함(안 제7조제3항)
- 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시 특례지원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적용대상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3, 제39조의4)

- 라. 경작목적의 대부료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안 제23조제2항)
- 마.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안 제23조제9항)
- 바. 경작목적의 대부료 납기를 종전 농지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사전 납부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폐지)
- 사. 잡종재산의 신탁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규정함(안 제31조의2)
- 아.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중 종전에는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로 하던 것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로 규정함(안 제39조의2 제5항 제3호)

부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6조제1항중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를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7조제2항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8조를 삭제한다.

14조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5조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 2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 3제6호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3항제1호중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제5호중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사용료로”를 “사용료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영 제9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6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를 “사업목적상 필요하여”로 하고,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률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이상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00%이상	20%미만 50%미만 100%미만 200%미만 500%미만
	10% + (증가율 - 10%) × 0.3 13% + (증가율 - 20%) × 0.1 16% + (증가율 - 50%) × 0.06 19% + (증가율 - 100%) × 0.03 22% + (증가율 - 200%) × 0.01 25% + (증가율 - 500%) × 0.005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23조의 3제1호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다목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여상인 사업”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2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동호나목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동호나목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는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층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 의 층면적)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 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 로 사용하는 층면적(건물의 경우 에는 해당층의 층면적)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 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조중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조제1항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대부정리부“로 한다.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토지신탁과 분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조의 2제1항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사거나 부동산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제5항제2호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제3호중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을 주군건축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조의 4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동제3항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공장용지내”를 “사업장”으로 하고, 제4항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 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며, 동항 제4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목적이 달성될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제1항중 “군·읍·면”을 “군의”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 ¶ 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47조(청사설계) 청사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 ¶ 49조제1항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유관 행정관서”로 한다.
- ¶ 50조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 ¶ 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60조의 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62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 지침 · 편람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 ·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제6항의 단서, 제9항, 제23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 · 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 ·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 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p>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보상금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2. (생략)</p> <p>②(생략)</p> <p>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⑤(생략)</p>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 ————— ————— ————— -- 지급 —————</p> <p>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p> <p>④~⑤(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u>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u> 3. <u>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u> <p><u><신 설></u></p>	<p>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1. _____</p> <p><u><삭 제></u></p> <p>3. <u>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u><삭 제></u></p>
<p>제8조(처분재원 비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사용허가조건) _____</p> <p>1. ~4.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7. ~8. (현행과 같음)</p>
<p>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볼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 (생 략) 5. <u>손해보험증서 제출</u> 6. <u>사용허가표지 부착</u> 7. ~8. (생 략) 	<p>제14조(사용허가조건) _____</p> <p>1. ~4.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7. ~8. (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_____</p>

현 行	개 정 안
<p>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 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 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군공시설 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삭 제></p>
<p>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u>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u></p>	<p>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u>재산관리관은</u>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래에 공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p>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하여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p>제19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p> <p>-----</p> <p>-----</p> <p>----- 제100조제2항제5호 및 제4호 -----</p> <p>-----</p>

현 행	개 정 안
제19조 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의 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_____ _____.
1.~ 5. (생략)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지역의</u> 공유재산	1.~ 5. (현행과 같음) 6. _____ <u>인정하는</u> _____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_____ _____ _____ _____.
1.~ 4. (생략) <u><신설></u> <u><신설></u>	1.~ 4. (현행과 같음)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u>매각하는 때</u>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_____ _____ _____ _____.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u>매각하는 때</u> 2. (생략)	<u><삭제></u>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3.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 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u></p>	<p><삭 제></p>
<p>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③————— ————— ————— —————.</p>
<p>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1. 영 제95조제2항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p>
<p>2.~ 4. (생 략.)</p>	<p>2.~ 4.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④————— ————— ————— —————.</p>
<p>1.~4. (생 략) 5. <u>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u></p>	<p>1~4. (현행과 같음) 5. <u>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u></p>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u>사용요율</u> 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u>사용료의 요율</u> —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③(삭제) — ---사용료를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④영 제92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④(삭제) —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1.—— 2.——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p>	<p>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⑦ (생 략)</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골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⑧ _____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_____ _____ _____</p>
<p>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 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23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증 가율	대부료인상을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	-----
-----	-----
-----	-----
-----	-----
-----	-----
-----	-----
-----	-----

<신 설>

②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회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 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로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제23조의 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1.

가.

현 행	개 정 안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생 략)	나. ----- ----- <u>이상인 사업</u> 다. <u>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u> 라. (현행과 같음)
마. <u>수출지향형 외국인</u>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사. (생 략)	마. <u>외국인</u> ----- ----- 바.~사. (현행과 같음)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생 략) 라. <u>수출지향형 외국인</u>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2. ----- ----- 가. ----- ----- <u>미만인 사업</u> 나. <u>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u> 다. (현행과 같음) 라. <u>외국인</u> ----- ----- 마.~ 바. (현행과 같음)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생 략) 라. <u>수출지향형 외국인</u>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사. (생 략)	3. ----- ----- 가. ----- ----- <u>미만인 사업</u> 나. <u>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u> 다. (현행과 같음) 라. <u>외국인</u> ----- ----- 마.~ 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산출기준)-----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2층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층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층면적)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left: 10px;">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층면적) </td> </tr> </table>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층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층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층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층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층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층면적)		
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5분의 1	3.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p><u>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u> × <u>부지평가액의 2분의 1</u></p> <p><u>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u>부지평가액의 4분의 1</u></p> <p><u>부지평가액의 5분의 1</u></p> <p><u>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u>부지평가액의 4분의 1</u></p> <p><u>부지평가액의 5분의 1</u></p>	<p>4.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신설></p>	<p>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신설></p>	<p>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동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동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동면적을 산출기준을 대부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생략) ③경작목적으로 대부분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 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 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 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제1항 및 제2항 ----- ----- ----- -----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 여야 하며 타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느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 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 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 당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 ①공유재산 재산 관리관은 반드시 대부재산의 대부 및 사 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대부정리 부 ----- ②(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 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 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 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 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 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영 제95 조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제39조의 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현 행	개 정 안
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u>농업진흥구역안</u> 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u>농업진흥지역안</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u>사용할</u> 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1.- <u>사용할</u>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⑤-
1. (생 략)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u>위치하거나</u>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 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1. (현행과 같음) 2.- <u>위치하거나</u>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 또는 -

현 행	개 정 안
3.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u>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u>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등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3.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건축별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특정건축물에 제5조</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39조 4(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의 4(매각대금의 감면)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3. (생 략) 4.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 (생 략)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 략)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1.~ 3. (현행과 같음) 4. _____ _____ 조성한 _____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 사업 _____

현 행	개 정 안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u>공장용지내의 재산</u>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 (생략)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u>공장용지내의 재산</u> 4. <u>수출지향형 외국인</u>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 사업내의 재산 5. (생략) ⑤ (생략) <u><신설></u>	3.----- -----사업장내-----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 -----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읍·면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u>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u>	제45조(청사정비계획 수립 등) ① -----군의----- ----- ----- ----- <u><단서 삭제></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용률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 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p>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p>
<p>제49조(종합청사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9조(종합청사의 도모) ①—————</p> <p>————— 유관 행정관서—————</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등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등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p> <p><신설></p>	<p>제50조(정의)—————</p> <p>————— 공용주택을 말한다</p>
<p>제62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60조의 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2조(준용)—————</p> <p>—————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p>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第132條 (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委任된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支出할義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委任하는 때에는 이를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4節 財產 및 公共施設

第133條 (財產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達成을 위하여 또 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產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財產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3·16>

③第1項에서 “財產”이라 함은 現金의의 모든 財產的 價值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第134條 (財產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產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交換·讓與·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第135條 (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 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

第5節 補則

第136條 (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7條 (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增進과 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地方公企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8條 削除 <94·3·16>

第8章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관계

第24編 農業 第5章 農政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을 위하여 따로 訓練機構 및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第26條 (技術 및 經營指導)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農水產物流通公社는 市長·郡守 또는 入住業者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技術 및 경영에 관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第27條 (生產製品의 販賣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工團地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產品生產團地에서 生產된 製品의 販賣를 促進하기 위하여 당해 製品生產者와 國家·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과의 隨意契約을 擴大하고 輸出의 지원 및 系列化의 促進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28條 (農漁村環境의 보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入住業者가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6號의 水質污染防止施設, 驚音·振動規制法 第2條第4號의 驚音·振動防止施設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0號의 大氣污染防止施設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9條 (農漁村特產品生產團地의 육성) 市長·郡守는 農漁村의 賦存資源과 遊休勞動力を 效率적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農漁村特產品生產團地(이하 “特產團地”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1>

第30條 削除 <94·12·22 法4823>

第31條 (보고) ①市長·郡守는 매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農外所得增大計劃의 推進實績을 綜合作成하여 다음 年度 1月末까지 管轄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道知事는 매년 市長·郡守로부터 보고받은 農外所得增大計劃의 推進實績을 보고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綜合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5章 農漁村定住生活圈開發

第32條 (農漁村定住生活圈의 開發) 政府는 農漁村地域의 生活環境, 產業基盤 및 편의·福祉施設등을 綜合的으로 整備· 확충하고 農業人등의 福祉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農漁村定住生活圈(이하 “定住生活圈”이라 한다)을 開發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法4818>

第33條 (定住生活圈의 開發對象地域) 定住生活圈의 開發은 面의 地域을 대상으로

第9章 時效

第69條 (金錢債權과 債務의 消滅時效) ①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權利로서 時效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것은 5年間 이를 行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權利도 第1項과 같다.

第70條 (消滅時效의 증단과 정지) ①民法中 消滅時效의 증단 및 정지에 관한 規定은 다른 法律에 特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權利에 이를 準用한다.

②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權利도 第1項과 같다.

第71條 (納入告知의 效力) 法令 또는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行하는 納入의 告知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있다.

第10章 財產

第1節 公有財產

第72條 (公有財產의 범위·구분 및 종류) ①이 法에서 "公有財產"이라 함은 地方自治團體의 부당이나 寄附의 採納 또는 法令이나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所有로 된 財產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公有財產은 그 用途에 따라 이를 行政財產·保存財產 및 雜種財產으로 구분하고, 行政財產은 이를 公用財產·公共用財產 및 企業用財產으로 分類한다.

第73條 (公有財產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公有財產을 管理하되, 소속 公務員에게 委任하여 公有財產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公務員을 "財產管理官"이라 한다.

第74條 (公有財產의 보호) ①누구든지 公有財產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許可없이 사용 또는 収益하지 못한다.

②公有財產은 民法 第2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雜種財產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2·22>

<1994·12·22 法律第4795號에 의하여 1992·10·1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 本項을 改正>

第75條 (寄附採納) ①公有財產에 編入할 財產을 寄附하고자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採納한다. <改正 99·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寄附하고자 하는 財產이 地方自治團體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寄附에 조건이 隨伴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採納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9·1·21>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財政法

第76條 (公簿登録 등) ① 公有財產을 취득하거나 寄附採納을 받은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登記·登錄 기타 權利保全에 필요한 節次를 취하여야 한다.

② 不動產 기타 權利에 관한 公有財產으로서 登記 또는 公簿에 登錄을 요하는 公有財產의 權利者名義는 당해 地方自治團體로 한다. 다만, 教育費特別會計 소관의 公有財產은 “教育監”으로 그 所管處의 名稱을 添記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第77條 (公有財產의 管理計劃)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碱算을 製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產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 第1項의 管理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公有財產의 범위 및 管理計劃의 작성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1>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管理計劃에 따라 公有財產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審查·分析하여야 한다.

④ 削除 <99·1·21>

(全文改正 94·12·22)

第78條 (公有財產審議會) ① 公有財產의 取得·管理 및 處分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各 地方自治團體에 公有財產審議會를 둔다.

② 第1項의 公有財產審議會의 구조와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79條 (公有財產에 관한 法令案의 協議)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公有財產의 管理와 處分에 관련되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第80條 (財產管理官등의 행위제한) ① 財產管理官 기타 公有財產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처리하는 公有財產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所有財產과 交換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違背되는 행위는 이를 無效로 한다.

第81條 (會計間의 財產移管) 地方自治團體의 各 會計중 1會計에 속하는 財產을 다른 會計의 財產으로 移管할 때에는 이를 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公公用 또는 公用에 사용하기 위하여 移管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公有財產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無償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4·12·22>

第82條 (行政財產 및 保存財產의 管理 및 處分) ① 行政財產 및 保存財產은 이를 貸付·賣却·交換·讓與·信託 또는 代物辨濟하거나 出資의 目的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1>

1. 그 用途 또는 目的에 障害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하는 경

특후에 公有財產으로 判明되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경우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災害對策등 불가피한 사유로 一定期間 公有財產을 占有하게 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한 경우

②第1項의 補償金의 徵收에 관하여는 第8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8條 (은닉된 公有財產의 申告에 대한 補償) 은닉된 公有財產을 발견하여 申告한 者에게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89條 (財產關係 公簿의 閱覽等) 公有財產의 事務를 취급하는 公務員이 公有財產 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필요한 書類를 閱覽 또는 謄寫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第2節 物 品

第90條 (物品의 범위) 이 法에서 “物品”이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動產과 地方自治團體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動產中 다음 各號의 것을 제외한 動產을 말한다.

1. 現 金
2. 有價證券
3.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產

第91條 (物品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을 管理하되, 소속 公務員에게 委任하여 物品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公務員을 “物品管理官”이라 한다.

第92條 (物品의 分類)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사용과 處分에 있어서의 適正性을 도모하기 위하여 物品을 그 사용과 處分의 目的에 따라 機能別·性質別·機關別·品目別로 分類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分類는 地方自治團體의 豊算에 정한 物品關係經費의 目的에 違背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豊算이 정한 目的에 따라서 分類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分類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分類의 基準과 기타 物品分類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3條 (標準化)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機關에서 사용하는 物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標準화하여야 한다.

는 제9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③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제96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9·4·30)

제86조 (가산금) ①법 제82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은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기한은 가산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제87조 (용도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7·16>

1. 도로·하천·제방·구거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1·6, 94·9·29, 98·7·16, 99·4·30>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능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삭제 <94·9·29>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7.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9. 유휴 잡종재산을 6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할 때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11. 동일인의 샤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12.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자투리부지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사유지의 소유자에게 그 부지를 대부하는 때
13.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14.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15.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안의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②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94·9·29, 99·4·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4.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건물 또는 건물있는 부지. 다만, 건물있는 부지로서 경제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에 한한다.
 2.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3. 공유재산의 지분
 4. 재해복구 기타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6. 재산가격의 2할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관리한 재산으로서 분쟁이 없고 연고가 확실한 재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불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불일 수 있다. <개정 92·3·30, 99·4·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2.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부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의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⑤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시에 대부료의 예정가액은 미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액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신설 98·7·16>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82조제 1 항 및 법 제8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한 축조 및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한 축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만료시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5·16, 98·7·16, 99·4·30>

제90조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0·11·6, 98·7·16, 99·4·30>

1. 삵체 <90·11·6>

2.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3. 기타의 물건은 1년

②제 1 항의 기간은 이를 개신할 수 있다.

제91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 6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4·30>

②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9·29, 98·7·16>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공장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8·7·16, 99·4·30>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90·11·6, 99·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0·11·6, 93·9·23, 94·12·23 대령14447, 96·6·29, 98·7·16, 99·4·30>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간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의 재산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99·4·30>

제92조의2 (대부료등의 감면) ①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9·4·30>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②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9·4·30>

(본조신설 98·7·16)

제93조 (손해보험계약) 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 · 地籍 지방재정법시행령

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94조 (대부계약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관리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대부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90·11·6>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 2 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기타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 ②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0·8·8·90·11·6, 93·9·23, 94·9·29, 98·7·16, 99·4·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삭제 <90·11·6>
 4. 제88조제 4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5. 예정가격이 1전당 1천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9. 지방자치단체가 전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할 때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11.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12.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13.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14. 인구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15.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17.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18. 지방공기업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1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20.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21. 삭제 (90·11·6)
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등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 22의2.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할 때
23. 재공고 입찰에 불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24.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 24의2.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폐지

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때

25.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불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26.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8.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을 전립하고자 하는 경우

③상반된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90·11·6>

제95조의2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 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1·6)

제95조의3 (잡종재산 매각시의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산증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95조제2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증개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4·30)

제96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등) ①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94·9·29, 98·7·16, 99·4·30>

② 제 1 항의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89·8·18, 95·11·30, 96·4·27, 99·4·30>

③ 재산가격이 3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99·4·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감정서 및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참고가 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9·8·18, 98·7·16>

⑤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4·9·29, 98·7·16>

⑥ 제102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96·4·27, 99·4·30>

⑦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당해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한다. <신설 94·9·29>

⑧ 공유림을 대부받아 조림·산림사업시설·초지조성 또는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부지를 교환하는 경우 임야가격의 평정등에 관하여는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 1 항중 "공유재산"은 "공유림"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보고, 동조제 3 항중 "매수"는 "교환"으로 본다. <신설 95·5·16>

⑨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가격은 유상이관의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중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이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한다. <신설 98·7·16>

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 ·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잡종재산중 동산(선박을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불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4·30>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신설 99·4·30>

⑦ 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9·4·30>

제100조의2 (소유권의 이전등) 제10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9·29]

제100조의3 (잡종재산의 매각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제91조 · 제92조 · 제96조 · 제100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부 및 매각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2. 도시재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 · 地籍 지방재정법시행령

에는 당해 재산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8·7·16, 99·4·30>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가계산등을 기준으로 부동산경기등 시장상황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가격평정 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4·30>

제97조 (공유재산개량시의 가격평정 등) ①공유재산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조림·부속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시설비·공과금 기타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결정한다.

제98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인접한 트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불일 필요가 있을 때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불일 필요가 있을 때

제99조 (사용료등의 귀속)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료·대부료·처분대금·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9·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9·29, 98·7·16, 99·4·30>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제102조의3 (대물변제의 범위등) ①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물변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사업시행결과 조성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등 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공원등 공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는 제9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9·4·30)

제102조의4 (잡종재산의 신탁) ①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고, 당해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상태대로 이전한다.

2. 기타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 금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동산신탁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기타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9·4·30)

第28編 商業·貿易·工業 第5章 工業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한 規約을 정하여 이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을 관리하는 者(이하 “管理者”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產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2·8)

第28條의7 (入住者등의 義務) ①아파트型工場의 入住者 또는 管理者는 다음 各號의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파트型工場의 耐力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構造部를 撤去하거나 破損 또는 훼손하는 行위

2. 建築物의 建築許可시의 設計圖書에 정하여진 機載荷重등을 초과하는 重量物 또는 振動發生裝置를 設置하는 行위

3. 아파트型工場의 安全維持 및 다른 業體의 生產活動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行위로서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行위

②入住者は 第28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約을 준수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8)

第28條의8 (義務違反에 대한 措置等)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入住者 또는 管理者가 第28條의7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아파트型工場의 安全에 危害를 가하거나 다른 業體의 生產活動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2·8)

第29條 削除 (99·2·8) 아파트형 공장

第5章 產業園地의 管理

第30條 (管理權者 등) ①管理權者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1. 國家產業園地는 產業資源部長官

2. 地方產業園地는 市·道知事

3. 農工園地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②管理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4·1·7. 95·12·29 法5091. 96·12·31>

1. 管理權者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2章 國土開發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事業施行者에게 귀속 또는 讓渡될 財產에 대한 가액은 實施計劃承認 당시를 기준으로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의 規定을 基本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新設 95·12·29>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귀속 또는 让渡되는 종래의 公共施設에 대하여는 國有財產法 第25條 및 第38條와 地方財政法 第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產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期間동안 당해 財產에 대한 使用料 및 貸付料를 免除한다. <新設 95·12·29>

⑦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財產의 登記에 있어서는 產業團地開發事業의 實施計劃承認書와 產業團地開發事業의 竣工認可書로서 不動產登記法에 의한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⑧ 第1項 내지 第7項에 規定된 公共施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8·5, 95·12·29>

第27條 (國·公有地의 處分割限等) ① 產業團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第2條第6號 각목의 事業에 필요한 土地는 당해 產業團地開發事業目的의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訂立할 수 없다. <改正 95·12·29>

② 產業團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財產은 國有財產法·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施行者(入住業體를 포함한다)에게 隨意契約으로 貸貸 또는 訂立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財產의 用途廢止(行政財產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訂立에 관하여는 實施計劃承認權者가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③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協議要請이 있을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用途廢止 및 訂立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에게 貸貸 또는 訂立하고자 하는 財產중 管理廳이 不明한 財產에 대하여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財政經濟院長官이 이를 管理 또는 處分한다. <改正 95·12·29>

第28條 (費用의 부담) ① 產業團地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은 事業施行者가 부담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產業團地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補助할 수 있는 費用의 種目과 比率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 (施設支援) ① 產業團地의 원활한 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港灣·道路·用水施設·鐵道·通信·電氣施設등 基盤施設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및 당해 施設을 공급하는 者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改正 95·12·29>

第28編 商業·貿易·工業 第2章 中小企業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 특별措置法

③中小企業振興法 第14條의 规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第16條의 规定에 의하여 產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로서 造成하는 地方 產業團地에 대하여는 당해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를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30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管理權者로 볼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11>

第12條 (私道開設許可에 관한 特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工場進入路를 造成하기 위하여 道路法 第2條의 规定에 의한 道路(道路法 第10條의 规定에 의한 準用道路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私道法 第2條의 规定에 의한 私道로 보아 私道開設을 許可하여야 한다.

第13條 (農地取得資格證明에 관한 特例)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移轉을 위하여 農地에 工場設立承認등을 얻은 者 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地法 第8條의 规定에 불구하고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

1. 農地轉用許可 또는 申告가 摘制되는 協議를 거친 者
2. 第8條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告示된 처리기준에 따라 工場設立承認등을 얻은 者
3. 農地法 第36條의 规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
4. 農地法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规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

(全文改正 99·2·5)

第14條 (國有財產등의 처분에 관한 特例) 國有財產法 第6條의 规定에 의한 國有財產의 管理廳 또는 地方財政法 第73條의 规定에 의한 公有財產의 管理廳은 中小企業者가 廃道 기타 이와 유사한 國有財產 또는 公有財產을 부득이하게 工場用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때에는 國有財產法 第12條第3項의 规定에 의한 國有財產管理計劃 또는 地方財政法 第77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公有財產管理計劃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財產의 管理廳 또는 公有財產의 管理廳은 國有財產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规定에 불구하고 당해 國有財產 또는 公有財產을 부득이하게 工場用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中小企業者에게 隨意契約에 의하여 이를 賣却할 수 있다.

第15條 (公有水面埋立免許의 효력에 관한 特例) 工業用地 확보를 目的으로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第4項 但書의 规定에 의하여 公有水面埋立免許를 얻은 者는 同法 第16條第1項 各號의 规定에 의한 許可의에 다음 各號의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法5911>

1. 山林法 第18條의 规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및 同法 第90條의 规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와 申告

第28編 商業·貿易·工業 第2章 中小企業 벤처企業育成에 관한 특별措置法

②實驗室工場은 生產施設用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③實驗室工場의 總面積(實驗室工場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 한다)은 당해 大學 또는 研究機關의 建築物 延面積의 2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實驗室工場에 대한 工場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⑤實驗室工場의 設置·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12·30)

第18條의3 (創業保育센터에 입주한 벤처企業에 대한 特例) ①大學 또는 研究機關 안에 設置·운영중인 創業保育센터로서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創業保育센터에 입주한 벤처企業은 建築法 第14條第1項·同法 第45條第1項 및 大德研究園地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型工場을 設置할 수 있다.

1.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이 지정하는 創業保育센터

2.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인정하는 創業保育센터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創業保育센터에 입주한 벤처企業으로부터 工場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8·12·30)

第19條 (國·公有財產의 賣却等)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專用園地 및 벤처企業集積施設의 開發 또는 設置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產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 國有財產 또는 公有財產을 벤처企業專用園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에게 賣却하거나 貸貸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產의 價格·貸貸料·貸貸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有 또는 公有의 雜種財產인 不動產을 벤처企業에 貸貸하는 조건으로 信託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財產法 第45條의2 내지 第45條의4의 規定은 公有不動產의 信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私立學校의 學校法人은 國有財產法 第24條第3項,

第28編 商業·貿易·工業 第2章 中小企業 벤처企業育成에 관한 특별措置法

地方財政法 第82條 및 第83條, 高等教育法 및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에게 國有 또는 公有의 土地나 大學의 校地의 일부를 賃貸하여 建物 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종류·用途등을 고려하여 賃貸契約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施設物을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私立學校의 學校法人에 寄附하거나 土地 또는 校地를 原狀으로 회복하여 反轉하는 것을 賃貸條件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98·12·30>

⑤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는 國有財產法 第24條第4項, 地方財政法 第84條, 教育法 및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築造한 施設物을 賃貸 目的과 동일한 用途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者에게 이를 사용·収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사용·収益의 기간·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施設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施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21條 (建築禁止등에 대한 特例) ① 벤처企業專用團地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禁止 및 제한에 관하여는 建築法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벤처企業專用團地의 產業團地開發計劃(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產業團地開發計劃을 말한다) 및 產業團地管理基本計劃(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產業團地management基本計劃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벤처企業集積施設은 建築法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市計劃法에 의한 綠地地域·專用住居地域 및 1種 一般住居地域을 제외한 地域에 建築할 수 있다.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은 建築法 第14條 및 第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構造安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할 수 있다.

第22條 (각종 負擔金의 免除등) ① 벤처企業集積施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負擔金을 免除한다. <개정 98·9·23>

1.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
2.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3. 山林法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代替造林費 및 第20條의3의 規定에 의한 山林轉用負擔金

第19編 財政·經濟一般 第9章 物價·公正去來·外資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 불어 허가된 경우 당해 방산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 내지 제18조 삭제 <99.5.24> 조세감면의 개정 등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③ 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5.24)

1. 고용증대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나. 조세특례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이상인 사업
 -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 · 地籍 地方稅法

自動車登録證을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交付한 自動車登録證의 回收 및 당해 自動車의 登錄番號票의 領置를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自動車登録業務가 市長 · 郡守에 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市長 · 郡守가 그 自動車登録證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自動車登録證의 回收 및 당해 自動車의 登錄番號票를 領置할 수 있다. <改正 86 · 12 · 31 法3912, 94 · 12 · 2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 · 郡守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道知事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自動車登録證의 回收節次와 自動車登録番號票의 領置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6 · 12 · 31 法3912>

[本條新設 76 · 12 · 31 法2945]

第196條의 13 (納稅證明書등의 제시) 自動車管理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録(市 · 道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變更登録에 한한다) 또는 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移轉登録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登錄官廳에 自動車稅領收證等 自動車稅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改正 95 · 12 · 6>

[本條新設 93 · 12 · 27 法4611]

第196條의 14 (滞納處分) 第196條의 5 내지 第196條의 8에 規定된 自動車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納付한 金額에 不足金額이 있을 때에는 즉시 滞納處分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76 · 12 · 31 法2945]

第196條의 15 (免稅規定의 排除) 다른 法律중에 規定된 租稅의 免除에 관한 規定은 自動車稅에 關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76 · 12 · 31 法2945]

第4節 農地稅

第1款 通 則

第197條 (定義) 農地稅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號와 같다.

- 農地 : 地籍公簿上의 地目에 불구하고 벼와 特殊作物(이하 이 節에서 “農作物”이라 한다)을 栽培하는 土地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말한다.
- 收入金額 : 農地에서 農作物을 栽培하거나 農作物을 栽培하게 함으로 인하여 收入한 또는 收入할 금액의 合計額을 말한다.
- 農地所得金額 : 農地로부터 얻은 收入金額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必要經費를 控除한 금액을 말한다.
- 特殊作物 : 果樹 · 人蔘 · 煙草 · 蔬菜 · 苗木(觀賞樹를 포함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을 말한다.

(全文改正 84 · 12 · 24)

第198條 (納稅義務者) ① 農地에서 農作物을 栽培하거나 農作物을 栽培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所得(이하 이 節에서 “農地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者는 農地所在地를 관할하는 市 · 郡에 農地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② 2人이상이 共同으로 農地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

第35編 水資源·土地·建設業 第2章 水資源·自然災害對策 河川法

可 및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

20. 埋葬 및 墓地 등에 관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墓改葬許可

② 管理廳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整備施行計劃을 수립하거나 第3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管理廳의 河川工事實施計劃을 認可하고자 하는 경우 第1項 각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4節 河川의 占用

第33條 (河川의 占用許可 등) ① 河川區域안에서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占用"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許可에는 河川의 汚染으로 인한 公害 기타 保健衛生上 危害를 防止함에 필요한 附款을 붙여야 한다.

1. 流水(河川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土地의 占用
3. 河川附屬物의 占用
4. 工作物의 新築·改築·變更. 다만,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河川工事を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土地의 鋸착·盛土·切土 기타 土地의 形質變更
6. 土石· 모래· 자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河川產出物의 採取
7. スケイ트장·遊船場의 設置
8. 大統領令이 정하는 植物의 栽植
9. 大統領令이 정하는 선박의 運航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⑤ 第30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하고, 第30條第6項·第7項 및 第31條의 規定은 第1項第4號·第5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事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4編 住宅・建築・道路 · 第3章 建築 건축법시례

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률에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⑤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삵제 <99·4·30>

2. 아파트지구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5. 상업지역

⑥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률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건축법시행령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농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 1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 (전문개정 99·4·30)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법 제50조의2제 1항제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 ②건축주는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 ④법 제50조의2제 1항제 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4. 너비가 2.5미터이상, 높이가 3미터이하일 것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 ⑤법 제50조의2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99·4·30)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의 토지이용계획
2.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관인생략

경

기

도

우(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산로 3가 1-4 (033) 249-4203 / FAX 249-2339

화재과 과장 노승철 담당 박정양

※※※

문서번호 회계 13330 ~ 1699

시행일자 1999. 6. 1. 부

경 우

문 율 러

찰 조 회계과장

선 금		지
일자	1999. 6. 1.	결
접 시간	J	재
수		
처리 과	(기재)	급
달 달자	1699	월

제 목 : 공유재산관리조례증 개정조례표준안 시달

제2차 공유재산 개선대책에 따라 '99. 4. 30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협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증 개정조례 표준안을 복임과 같이 시달하니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시·군은 동 표준안을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

2. 동 표준안의 각 규정중 "도"는 시·군으로 풀어를 바꾸어서 개정

3.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10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군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새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 바란 (필수없는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협행법규를 적용하여도 무방함)

4. 동 표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조례 개정 시 전부 포함되도록 정비하고 동조례 시행규칙은 위조례 개정내용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할. 다만, 제102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한 선탁계약서 서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일별 표준안을 수립할 계획임.

전문일 : 공유재산관리조례증 개정조례표준안부(별도로 수립)

경 기 도 지 사

전결자: (날짜: 2000. 6. 1. 주기)

○○道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標準(案)

行政自治部

이 유인물은 재생용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목 차

1. ○○도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1
2. 신·구조문 대비표	10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제1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을 “법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 2증 “제100조 제2항 제5호”를 “제100조 제2항 제5호 ·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 3제6호 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 중 “제1호”를 “제5항 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 제1호 중 “제6호”를 “제2호, 제6호”로 하고,

"제16호"를 " 및 제1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5호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능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능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제4항중 "영 제92조제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6항중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고, 제9항중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로 하며,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집

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하되, 월할로 계산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차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을	대 부 료 인 상 을
10%이상 20%이상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00%이상	20%미만 50%미만 100%미만 200%미만 500%미만
10%이상 20%이상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00%이상	10% + (증가율 - 10%) × 0.3 13% + (증가율 - 20%) × 0.1 16% + (증가율 - 50%) × 0.06 19% + (증가율 - 100%) × 0.03 22% + (증가율 - 200%) × 0.01 25% + (증가율 - 500%) × 0.005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

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23조의 3제1호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마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2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

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 .	사용하는 면적
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층면적 ×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층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층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층면적)

3.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로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치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 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1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 2제1항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제3항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제5항제2호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등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제3호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 4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제3항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를 “사업장내”로 하고, 제4항제1호중 “외·투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중 “도, 시·군·구, 읍·면·동의”를 “당해 도의”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여”로 하고,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을 “유관행정관서를”로 한다.

제50조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6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0조의 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증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로 산출기초는 이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로·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현 행	개 정 안	시 유
2. (생략) ② (생략)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낸도의 발 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온수지산신고서 진수 후 담당공무원의 헌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 으로 확정된 낸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빈의제공
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삭제〉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 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 ○ 중요사항의 범위가 모호한바 재산관리관 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 심의위에 회부도록 함 ○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 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 의 실효성이 있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 서 심의를 생략

한 행	개 정 안	사 유
제8조(차분재원 비도) 광유재산의 차분재원은 반드시 차분재산에 실용하는 새로운 재산 조설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차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83조의2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삭제
제11조(관리 및 차분) ①~②(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광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3. 군지역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4. (생략) ④ (생략)	제11조(관리 및 차분)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 군지역의 경우 제1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군지역과 격차가 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
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조건) -----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1. ~4. (생략)	1. ~4. (현행과 같음)	
5. 손해보험증시 제출	5.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빌도 조건 불요.
6. 사용허가표지 부착	6.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성이 있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7 ~8. (생략)	7. ~8.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빌 제73조제2항과 같이 위한 재산관리관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분명히 함
제17조(불용재산의 치분) 공유재산중 재산기처의 중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 합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대토지가 있어 구획정리에정지구, 공공시설의 설치에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83조의 2 신설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삭제
제18조(잡종재산의 헌황파악) ① 잡종재산의 직접한 관리와 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헌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특이사항을 파악토록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하며 빌도 장부관리를 생략토록 함

현 행	기 정 안	사 유
<p>1. 장래에 공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p> <p>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p> <p>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있는 재산</p> <p>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p> <p>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p> <p>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 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세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1. ----- -----</p> <p>2. ----- -----</p> <p>3. ----- -----</p> <p>4. ----- -----</p> <p>5. ----- -----</p>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 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 제2항제1호 규정을 대체 규정 ○ 영세민 철거주민의 이자부담을 완화(10년 이내 인 8% ⇒ 10년이내 인 5%) ※ 제2항제3호 규정을 대체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재산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의 잔액에 인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 ----- ----- -----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1. 〈삭제〉 2. -----제5항제1호----- 3. 〈삭제〉	○ 제1항제5호 규정으로 대체 규정됨 ○ '98. 8.20개정시 누락된 부분을 분명히 하 기 위하여 제5항을 명기 ○ 제1항제6호 규정으로 대체 규정됨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인8퍼센트의 이자를	③----- ----- -----	

한 행	개 징 안	사 유
불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95조제2항 <u>제6호</u> ,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1. ----- <u>제2호</u> , <u>제6호</u> ----- 및 <u>제16호</u> -----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제6호 적용자(폐진부지 사용자)와 협평유지 필요.
2.~4. (생략)	2.~4. (한 행과 같음)	
<u>〈신설〉</u>	5. 공업매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구역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담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개정전 제22조제8호 규정을 추가('98. 8. 20 준칙시달시 누리)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인 4퍼센트의 이자를 불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④----- ----- ----- ----- -----.	
1.~4. (생략)	1.~4. (한 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정진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유통)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5.-----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의 배각용도 제한 폐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유통)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유통) ①----- -----사용료의 유통----- ----- ----- ----- ----- -----	<input type="checkbox"/> 용이정리
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고집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민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기본적으로 대부료의 사전정수가 아닌 시후정수로 대부료 정수가 이리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근거가 있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는것임
③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고집에 의한 팔입체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정수한다.	③팔입체식의 ----- ----- ----- ---	<input type="checkbox"/> 영 제92조제3항 삭제와 관련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① 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 ----- ----- 1. ----- 2. ----- -----	○ 영 제92조 제3항 제3호의 경우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이상 필요하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생략)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단시신설>	⑤ (현행과 같음) ⑥ ----- -----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 완화
⑦ (생략) ⑧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 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⑧ -----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	○ 외국인 투자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⑨ 벤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계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 할 수 있다.</p> <p>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인간대부료(사용료·민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인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인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⑨ ----- 벤치기업전용단지, 벤치기업집적시설의 ----- 또는 벤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할 수 있다.</p> <p>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인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인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인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 벤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개정('98. 9.23)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99. 5. 2 벤치기업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 일환에 의함</p> <p>○ 공유재산대부료의 산정방법은 이전 과세시 가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90.11.6)되어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등에관한특례조항을 두었음 · 이와 같은 제도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히가를 받아 사용하는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무단으로 전유한자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함으로서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 없이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p>

현 행	개 정 안	사 유																										
<table border="1"> <thead> <tr> <th>증 가 율</th><th>대 부 료 인 상 율</th></tr> </thead> <tbody> <tr> <td>10%이상 20%미만</td><td>$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td></tr> <tr> <td>20%이상 50%미만</td><td>$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td></tr> <tr> <td>50%이상 100%미만</td><td>$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td></tr> <tr> <td>100%이상 200%미만</td><td>$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td></tr> <tr> <td>200%이상 500%미만</td><td>$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td></tr> <tr> <td>500%이상</td><td>$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td></tr> </tbody> </table>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table border="1"> <tbody>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body> </table>	-----	-----	-----	-----	-----	-----	-----	-----	-----	-----	-----	-----	<p>②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험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회망자가 없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기점조정 할 수 있다.</p> <p>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담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임대료와 현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회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서 20퍼센트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도록 함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3조의 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광유재산을 입대·대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23조의 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 ----- ----- ----- ----- 1. ----- ----- ----- -----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생략)	○ 8·이정리 ○ 외국인 투자법위 확대 ○ 외국인 투자법위 확대

회 행	개 정 안	사 유
마. 수출지향 투자기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 사. (생략)	마. 외국인 ----- ----- 마. ~ 사. (현행과 같음)	O 용이 중복 징리(수출지향형과 100퍼센트 수출은 같은 의미임)
2. 75퍼센트를 김민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2. -----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리이상 2천만달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가. ----- ----- <u>미만인 사업</u>	O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u>미만인 사업</u>	O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수출지향 투자기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 ----- -----	O 용이 중복 징리(수출지향형과 100퍼센트 수출은 같은 의미임)
마. ~ 바. (생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3. 50퍼센트를 감면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3. -----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리이상 1천만달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가. ----- ----- <u>미만인 사업</u>	O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고용인원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input checked="" type="radio"/>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 -----	<input checked="" type="radio"/> 용이증 복 정리(수출지향형과 100퍼센트 수출은 같은 의미임)
마. ~사. (생략)	마. ~사. (현행과 같음)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 ----- 1. 건물전체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담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계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담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비에 의한 험재의 전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2. 진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진물 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유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부를 받은자가 진용으로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X (진물의 경우는 해당주의 총면적)</p> <p style="text-align: center;">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X (진물의 경우는 해당주의 총면적)</p> <p>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진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담해 계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2</p> <p>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p> <p>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p>	<p>○ 종전 진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임</p> <p>○ 용이정리</p>

현 행	개 정 인	사 유
<p>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분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계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리.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계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p>	<p>1. 제1호·제2호의 고정에 의한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계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리.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input checked="" type="radio"/> 용이장비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u>대부를 받은</u> <u>자가 다른 사람</u> <u>과 공동으로</u> X <u>사용하는 총</u> <u>면적</u></p> <p><u>대부를 받은자가</u> <u>전용으로 사용하는</u> <u>면적</u></p> <p><u>공용으로 사용하는</u> <u>자들이 전용으로</u> <u>사용하는 총면적</u></p> <p><u><신설></u></p>	<p>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 는 건물평가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 산한 금액을 '담배재산의 평가액'으로 한 다.</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부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부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 로 공동면적의 산출이 '설명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p>	<p>O. 지하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을 정함'</p> <p>O. 특수한 건물의 공동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p>
<p><u><신설></u></p>		

현 행	개 정 안	시 유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②(생략) ③경작목적으로 대부분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약종료 위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친재·지번 기타 제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u>표에 할 수 있다.</u>	시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함께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사에 참부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u>(삭제)</u> ④제1항 및 제2항의 ----- ----- ----- ---유예하거나 따로 징벌 수 ---.	<input type="radio"/> 제23조제2항 개정 관련 <input type="radio"/> 제3항 삭제 관련 <input type="radio"/> 예산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
제27조(대부료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계산 조성비와 계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개워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계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계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시용료·빈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 ① <u>금융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대부재산의 대부 및 사용히 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u> ② (생략) <u>〈신설〉</u>	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 ① <u>재산관리관은 대부정리부</u> ----- ② (현행과 같음)	○ 용이정리와 불필요한 내용 삭제
제39의 2(수의계약 매각임위 등) ① 영 제95조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 (생략)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 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	제39의 2(수의계약 매각임위 등) ①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신탁의 종류를 정함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이 정정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민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짐유자(하친법 제25조에 의하여 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 ----- ----- ----- ----- ----- ----- ----- ----- ----- ----- 1. ----- ----- ----- ----- ----- ----- ----- ----- ----- ----- ----- 2. ~ 3. (생략) ④ (생략)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부동산투기의 판단과 실제 이행 확인이 곤란하므로 실효성이 있는 규정 삭제
1.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 ----- ----- ----- ----- -----	
제39조의 4(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계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진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의 4(매각대금의 감면) ①----- ----- ----- -----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4. ----- 조성한----- -----	○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 -----	

현 히	개 정 한	사 유
1. (생략)	1. (행파 갈음)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펀자지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외 재산	2. ----- -----사업 -----	○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펀자용지내외 재산	3. ----- -----사업장내----- ①----- -----	○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 투자증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외 재산	
2. (생략)	2. (행파 갈음)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미만인 펀자용지내외 재산	3. ----- -----사업장내외 재산	○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천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 내외 재산	4. 외국인----- -----	○ 용이증 복 정리(수출지향형과 100퍼센트 수출은 같은 의미임) 정리

현 행	기 정 안	사 유
<p>5. (생략)</p> <p>⑤ (생략)</p> <p><u>〈신설〉</u></p> <p>제45(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도지사는 도·시·군·구·읍·면·동의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5. (한행파 같음)</p> <p>⑤ (한행파 같음)</p> <p>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갑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단보로 근거 담설점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해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45(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 담해 도의----- ----- 고려하여----- ----- ----- ----- ----- ----- 한다.</p> <p>② (한행파 같음)</p>	<p>○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갑액 매각을 한바 있으므로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p> <p>○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p>

현 행	개 정 의 안	사 유
<p>제49조(종합청사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 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 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 지사, 부지사,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 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p> <p>(시행일)</p> <p>제62조(준용)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49조(종합청사의 도모) ①</p> <p>---</p> <p>--- 유관 행정관서를</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 지사, 부지사,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 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p> <p>제60조의 2(준용) <u>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 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u></p> <p>제62조(준용) ---</p> <p>---</p> <p>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면령 등 예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산하기관별 적용토 록 함 ○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의 경우도 관사를 준 용토록 함 ○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판사에 준하여판 리 되도록 함 ○ 국유재산 준용의 범위를 명확히 함(국유 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범위 법령의 위임이 있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는 비경이를 방지하기 위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부칙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꿈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유통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용대부료 산출 기준은 이 조례를 꿈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증이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개산부터 적용한다.</p>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군 보

제 152 호
1999년 8월 30일 (월)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 제 1999-302호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3
- 양주군 고시 제 1999-63호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고시 6
- 양주군 공고 제 1999-304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 7

회								
람								

발행 : 양주군

편집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52 호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 1999-302 호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 주 군 수

1999년 8월 30일

1. 조례제명 :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2. 개정취지

외국인 투자 촉진과 현행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제2차 '공유재산 개선대책'에 따라 19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바 동시에 행령 개정과 관련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종전"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사용토록 함(안 제5조)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등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토록 함(안 제7조제3항)

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부시 특례지원이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 적용대상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함(안 제19조의2)

○ 적용대상 공유재산의 범위 확대

-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안의 재산으로 규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해당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9조의 3)

- 재산매각대금을 20년간 4%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중 종전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에서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으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22조제4항제5호)

- 대부(사용)요율 1000분의 10이상 적용재산 중 종전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확대함(안 제23조제8항)

-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중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공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안의 재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한 용지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39조의4제1항제4호)

양 주 군 보

제 152 호

○ 적용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 대부분 전액 감면대상에 종전 제조업에 한정하던 것을 업종구분을 삭제하여 범위를 확대함(안 제23조의3)
- 재산매각대금 전액 감면대상에 종전 공장건설사업에 한정하던 것을 공장건설이외 사업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안 제39조의4제3항, 제4항)

○ 외국인 투자기업에 재산매각대금을 전액 또는 50%감면하여 매각하는 경우 용도지정, 특약등기을 하도록 하여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안 제39조의4제6항)

라.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보완함

○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철거주민의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종전 8%의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5%로 이자부담을 완화함
(안 제22조제1항제5호, 제6호)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5년간 8%의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제1호, 5호)

마. 경작목적의 대부분에 대한 종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
(안 제23조제2항)

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할 경우 1000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토록 함(안 제23조제6항)

사.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안 제23조제9항)

아.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과다한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규정 적용대상에서 변상금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자. 경작목적의 대부료 납가를 종전 농지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대부계약시 사전 납부가 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폐지)

차. 임대재산의 신탁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규정함(안 제31조의2)

카.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중 종전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로 규정함(안 제39조의2제4항제3호)

타. 공용전세주택에 대해서도 관하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파.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국유재산관리업무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등 예규를 준용하도록 준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2조)

양 주 군 보

제 152 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51-820-2185~6, Fax 0351-820-2189)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99. 1. 21 법률 제5647호)되었고, 이어 동법시행령이 개정('99. 4.30 대통령령 제16267호)됨에 따라 동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종전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사용토록 함(안 제5조)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의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토록 함(안 제7조 제3항)

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부시 특례지원이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 적용대상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3, 제39조의4)

라. 경작목적의 대부료에 대한 종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함(안 제23조 제2항)

마.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10이상으로 함(안 제23조 제 9항)

바. 경작목적의 대부료 '납기를 종전 농지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대부계약시 사전 납부가 되도록 함(안 제26조 제3항 폐지)

사. 잡종재산의 신탁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규정함(안 제31조의2)

아.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중 종전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건축 법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로 규정함 (안 제39조의2제5항제3호)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법 135조(공공시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농어촌정주생활권의 개발)

지방재정법 제73조(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 제76조(공부등록등)

"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88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

" 제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 제90조(잡종재산의 대부기간)

" 제91조(대부료등의 납기)

" 제92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제92조의 2(대부료등의 감면)

"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 제96조(잡종재산 가격의 평정등)

"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

" 제102조의 4(잡종재산의 신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국유재산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조세감면의 기준등)
 - 지방세법 제197조(용어의 정의)
 - 하천법 제25조(하천의 점용허가등)
 - 건축법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 예고결과 : '99. 8. 30. ~ '99. 9. 18.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표준안(경기 회계 13330- 1498)
 - 군보 152호(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99. 8. 30자 입법예고문)